

『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』와 『대구대학교』간

상호협력 협약서

대구대학교와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는 상호 협력의 원칙에 따라 협력 및 유대 강화를 통해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교통약자 편의증진 및 장애인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친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교류증진과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임무) 양 기관은 상대기관의 규정을 존중하고, 본 협약에서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3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.

1. 장애학생 철도이용 시 편의지원을 위한 협력
2. 철도여행 지원을 통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
3.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장학지원 협력
4.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및 모니터링 지원
5.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상호 참여
6. 기타 상호 발전에 필요한 협의 사항

제4조(양도금지) 이 협약의 권리와 의무는 서면에 의한 상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.

제5조(실무협의회) ①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업무에 관한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비밀유지) ① 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② 양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.

제7조(협의조정)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.

제8조(협약서의 효력)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,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.

② 이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11월 7일

이근용



사랑·빛·자유의 전당
대구대학교

부총장 이근용

이용우

KORAIL 대구본부

본부장 이용우